

의안번호	제 29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1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
----------	-----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과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조치 신설로 양성평등사회 실현 추진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여성정책 기본조례 → 양성평등 기본조례
-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안 제6조)
- 여성정책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7조)
- 성 주류화 조치 명확화(안 제12조~제15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결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 정책결정과정 참여(안 제17조)
 -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둘 수 있음
-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안 제19조)
- 여성주간 →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 변경(안 제22조)
- 여성·가족친화도 조성을 위한 도의 노력(안 제23조)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25조)
-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과 복지증진 활동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거버넌스기구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가능(안 제3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의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의 책무) 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충청북도 성 주류화 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2조(성 주류화 조치 지원)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 도지사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성인지 통계) ① 도지사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공직 참여)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 및 일·가정 양립지원)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

을이고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의 일자리창출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여성고용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여성·가족친화도 조성)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적인 시설·문화 확산 및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기관·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5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운용심의)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구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양성평등정책 기관·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

제33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 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법 제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명칭부여 및 변경권한을 갖는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25조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4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34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

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